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2월 4 일

국무총리 한 명 속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 유 시 민**

●대통령령 제19744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제25호란 및 제2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크라툼(Kratom)	
26	5-메오-딤트(5-Meo-DiPT)	5-methoxy-N, N -diisopropyl tryptamine

별표 4에 제25호란 및 제2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디메칠암페타민 (Dimethylamphetamine)	1-phenyl-2-dimethylaminopropane 또는 2-dimethylamino-1-phenylpropane
26	2씨-아이(2C-I)	2,5-dimethoxy-4-iodophenethylamine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크라툼 등 4종의 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이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2월 4 일

국무총리 한 명 속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이 치 범**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92호

관

부

2006.12. 4. (월요일)

제7조제3항제1호중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 ₂)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 ₁₀)	연간평균치 50 μ g/m ³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μ g/m ³ 이하	베타선흡수법(β -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 ₃)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μ g/m ³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μ g/m ³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별표 1 제3호의 제목 “수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 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준값(mg/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 ⁶⁺)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업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BOD) (mg/L)	부유 물질량 (mg/L)	용존 산소량 (mg/L)	대장균군(균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	-

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

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

기 어려움.

야.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	도안모형	도안요령	색 상		
			원	물방울	입
매우 좋음	Ia			청색(cyan, C) 100~90%, 빨강색(magenta, M) 20~17%, 검정색(black, K) 5%	빨 강 색 (magenta, M) 60%, 노 랑 색 (yellow, Y) 100%
좋음	Ib			검정색(black, K) 15%: 청색(cyan, C) 85~80%, 노랑색(yellow, Y) 43~40%, 빨강색(magenta, M) 8%	빨 강 색 (magenta, M) 60%, 노 랑 색 (yellow, Y) 100%
약간 좋음	II			청색(cyan, C) 57~45%, 노랑색(yellow, Y) 96~85%, 검정색(black, K) 7%	-
보통	III			청색(cyan, C) 20%, 검정색(black, K) 42~30%	-

등급	도안모형	도안요령	색 상		
			원	물방울	입
약간 나쁨	IV			빨강색(magenta, M) 35~30%,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나쁨	V			빨강색(magenta, M) 65~55%,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매우 나쁨	VI			빨강색(magenta, M) 100~90, Y 100%, 검정색(black, K) 10%	-

나. 도안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 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뽕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꼬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원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갈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띠며 매우 많음.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물질량 (SS) (mg/L)	용존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필 a (Chl-a) (mg/m ³)	대장균군 (군수/100mL)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물질량 (SS) (mg/L)	용존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필 a (Chl-a) (mg/m ³)	대장균군 (군수/100mL)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별표 2 1. 행정계획의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의 과목(2)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중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을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가목(1) 및 나목(1)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란 및 안티몬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1호중 벤젠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II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중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매우 좋음 등급정도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에 관한 환경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건강보호기준을 강화하며, 생활환경기준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급을 체계화·구체화하여 국민이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에 관한 환경기준 강화(영 별표 1 제1호)

- (1) 대부분 이미 목표기준을 달성하였거나 선진국에 비하여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함.
-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 특별대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영 별표 1 제3호가목(1))

-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가 선진외국보다 훨씬 적은 9개 항목에 불과하고, 기준치도 현실화되지 아니하여 위해성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 (2) 위해성이 큰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기존 항목 중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인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먹는물 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함.
- (3)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의 체계화(영 별표 1 제3호가목(2))

- (1) 수질등급을 숫자로 구분하여 I 등급 외의 물은 나쁜 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고, 전국 하천의 50퍼센트가 II등급에 해당되어 등급 구분의 실효성이 적었음.
- (2) 등급 명칭을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등 서술형으로 전환하고, 종전 II등급을 “좋음”, “약간 좋음”으로 세분화하는 등

기존 5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체계화함.

- (3) 국민이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올바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4대강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시행과 연계하여 세분화된 목표수질을 정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조정 등(영 별표 1 제3호나목)

- (1)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없더라도 이 등급에 속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호소가 하나도 없고, 녹조발생의 직접적인 지표가 없어 호소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2)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의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에서 리터당 2마이크로그램으로 현실화하고, 녹조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항목을 추가함.
- (3) 호소의 환경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목표수질의 설정 및 수질개선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됨.

<법제처 제공>

부 령

◎산업자원부령 제37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12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공급관[호칭지름]을 “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초과인 저압의 공급관 중 10미터 미만인 공급관,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